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7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3.8.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이 상향됨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자에 허용되는 선물 가액 범위 50%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088, 팩스 : 044-201-5506